

의안번호	제 159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300회)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정지숙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5월 2일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5월 2일

발 의 자 : 정지숙 의원

최병윤·김영주·김양희
박종성·유완백·이광진의원

1. 제정이유

-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도모.
-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.

2. 주요내용

- 행·재정적 지원(안 제2조)
- 공무원의 파견(안 제3조)
- 유효기간(부칙)
 -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의견 : 의견수렴과정 거침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경기시설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(이하 “대회”라 한다)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원회가 속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정적 지원 요청시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대회 종료후 대회기간이 속한 해의 연말까지 사업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